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 25-61 호
----------	-----------

제출년월일 : 2025. 5.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안 이유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서울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등)

2) 추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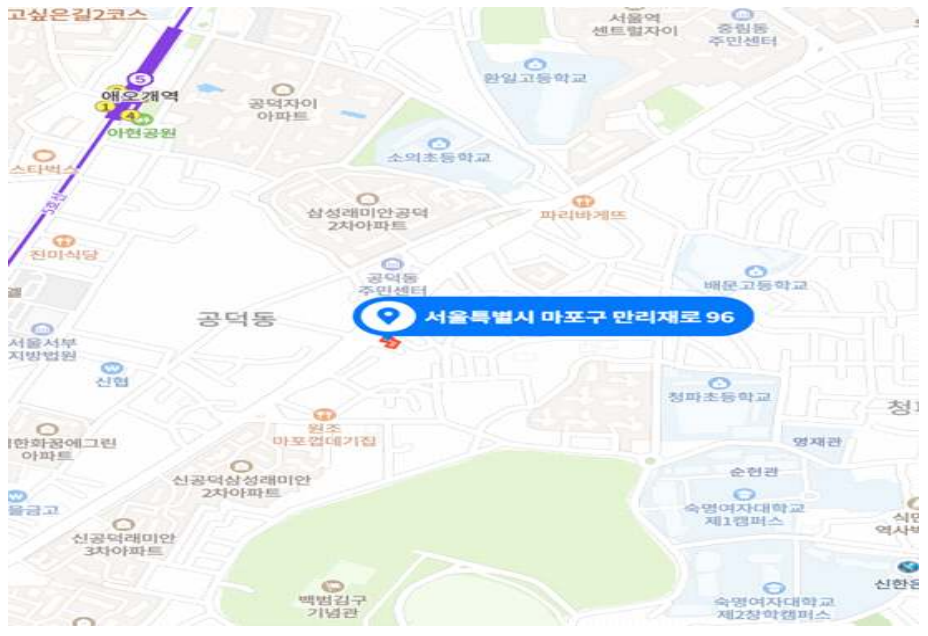
-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내실있는 시설 운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 제공
-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운영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및 컨설팅 지원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대상별* 교육 실시
* (어린이)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부모
(사회복지) 입소자, 조리원, 시설장, 돌봄종사자, 가족 또는 보호자
- 어린이·사회복지 연령별·대상별·질환별 식단·조리안내서 제공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등 식생활 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라. 위탁시설의 개요

소재지	규모 및 시설	위치도
마포구 만리재로 96, 4층 (공덕동)	149.5㎡ (사무실 1, 회의실 1, 교육실 1)	

마. 민간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e-나라도움, 구 홈페이지에 공고)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 분	내 용
예 산	750,000천원
산출근거	220개소 이상일 경우 사업예산 7억 규모 (2025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재 원	국비30%, 시비35%, 구비35%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서 참고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삭제 <2024. 9. 26.>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서

위탁사무명	서울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 명 (주관부서)	마포구보건소 (위생과)	부서장	(행정5급, 조세원, 9190)		
		팀 장	(보건6급, 권일오, 9181)		
		담당자	(보건6급, 조은아, 9183)		
사무개요	○ 사업목적: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영양이 확보된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급식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 사업대상: 어린이급식인원 100명(사회복지시설 50명)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시설				
	계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221	157	4	22	38
	○ 운영방법: 민간위탁(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간위탁 추진목적	○ 인 력: 센터장(비상근) 1명, 팀장 3명, 팀원 11명				
	○ 주요내용				
	-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순회방문 및 급식소 컨설팅 등				
위탁근거	- 대상별 맞춤형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영양사 등 식품영양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어린이·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에 기여				
	○ 법적근거				
위탁내용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상급기관 지침 및 방침서 기재				
위탁내용	- 2025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통합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관련,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추진현황				
	- 2020. 9. 1. ~ 2022. 12. 31. 신규위탁(공개모집)				
위탁내용	- 2023. 1. 1. ~ 2025. 12. 31. 재계약(심사)				
	○ 위탁기간: 3년(2026. 1. 1. ~ 2028. 12. 31.)				
	○ 위탁내용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및 컨설팅 지원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대상별* 교육 실시				
위탁내용	* (어린이)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부모				
	(사회복지) 입소자, 조리원, 시설장, 돌봄종사자, 가족 또는 보호자				
	- 어린이·사회복지 연령별·대상별·질환별 식단·조리안내서 제공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등 식생활 관련 정보 배공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검 토 항 목		내 용												
적정성 검 토	적정성	① 서비스 중요성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중요도가 크고 전문기관에 의한 지속적인 사업수행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												
		② 서비스 수혜대상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세심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계층												
		③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급식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 식단 개발, 대상별 방문교육 서비스, 영양관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급식관리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효율성	④ 민간의 전문성 활용 급식관리 지원사업은 숙련된 전문성과 역량이 요구되며, 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기관의 위탁운영으로 급식관리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체계적인 사업추진 가능												
		⑤ 경제적 효율성 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관리 등 행정업무의 부담을 감소하고 행정조직의 확대를 방지												
		⑥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연간 사업계획에 근거한 사업실적 관리 및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사업개선 및 발전도도 가능												
		⑦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여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급식소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경쟁·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 없음												
		⑧ 관리운영의 투명성 마포구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예산의 사전검토 승인 및 정산보고와 정기적인 지도·감독으로 관리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기 존 수탁기관 및 선정방법	○ 수탁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수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 위 탁 금: 750,000천원(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선정방법: 재계약 *최초위탁(공개모집) 2020. 9. 1.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e-나라도움, 구 홈페이지에 공고)													
민 간 위탁금 (예산지원형 위탁)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별</th><th>민간위탁금(천원)</th><th>세부 산출내역</th></tr> </thead> <tbody> <tr> <td>2023년</td><td>575,000</td><td>140개소 이상일 경우 사업예산 5억 규모</td></tr> <tr> <td>2024년</td><td>625,000</td><td>180개소 이상일 경우 사업예산 6억 규모</td></tr> <tr> <td>2025년</td><td>750,000</td><td>220개소 이상일 경우 사업예산 7억 규모</td></tr> </tbody> </table> - 금년 증가내역: 125,000천원 - 증가사유: 관리대상 급식소(220개소 이상) 증가에 따른 사업예산 증액		연도별	민간위탁금(천원)	세부 산출내역	2023년	575,000	140개소 이상일 경우 사업예산 5억 규모	2024년	625,000	180개소 이상일 경우 사업예산 6억 규모	2025년	750,000	220개소 이상일 경우 사업예산 7억 규모
연도별	민간위탁금(천원)	세부 산출내역												
2023년	575,000	140개소 이상일 경우 사업예산 5억 규모												
2024년	625,000	180개소 이상일 경우 사업예산 6억 규모												
2025년	750,000	220개소 이상일 경우 사업예산 7억 규모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 향후계획 - 2025. 7. ~ 8.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 2025. 9. ~ 10.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협약 체결													